등록번호	일자리경제과-2372
등록일자	2016.1.15.
결재일자	2016.1.1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일자리지원팀장	일자리경제과장	경제재정국장	부구청장
김미중	김철수	오면숙	오남희	01/15 <b>조인동</b>
협 조				

2016년 상반기

#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



**서 대 문 구** 일자리경제과

#### 2016년 상반기

##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

201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│. 추진근거

- ■『고용정책기본법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』
- ■『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』행정자치부

## Ⅱ. 사업개요

■ 사업기간 : 2016. 3. 2. ~ 6 .30. [4개월]

■ 선발인원 : 총 32명 (일반: 30명, 고령: 2명)

■ 사업현황 : 방치 자전거 수거 정비사업 등 3대유형 9개 사업

■ 추진일정

연번	내 용	일 정	비고
1	모집공고	2016. 1. 18. ~ 1. 27. (10일)	
2	신청접수	2016. 1. 20. ~ 1. 27. (6일)	
3	자격심사	2016. 1. 28. ~ 2. 24. (28일)	
4	선발통보	2016. 2. 25. (목)	
5	사업참여	2016. 3. 2. ~ 6. 30.(4개월)	

**■소요예산**: 약 110,232천원 (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)

- 총 사업비(인건비) 212,500천원 중 52% 상반기 집행

# Ⅲ.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

구분	'15년 지침	'16년 달라지는 사항
	○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 (재산 2억원 이하)	○ 기준중위소득의 60% 이하 (재산 2억원 이하)
참여대상	○ 배제 : 기초생활수급자	○ 배제 : 생계급여 수급권자
B 41-110	○ 제한 : 만65세 이상 노인 (선발자의 27~40% 이내)	○ 제한 : 만65세 이상 노인 (선발자의 20% 이내 원칙, 최대 25%까지 가능)
		○ 확대 : 청년(18~34세) 우선 선발(5% 이상)
최저임금	ㅇ 5,580원	ㅇ 6,030원
	○ 65세 미만 : 주 26시간 이내	○ 65세 미만 : 주 30시간 이내
근로시간	○ 65세 이상 : 주 15시간 이내 *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	○ 65세 이상 : 주 15시간 이내 *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 (노인 선발 단계적 폐지 20(25)% → 0)
	○ 지속적이고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5대 유형 10개 사업	○ 지속적·생산적·공동체적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4대 유형 8개 사업
대상사업	<ol> <li>지역특화자원 개발형</li> <li>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</li> <li>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</li> <li>지역생활공간 개선형</li> <li>서민생활 지원형</li> </ol>	① 지역자원 활용형 ② 지역기업 연계형 ③ 서민생활 지원형 ④ 지역공간 개선형
유형비율	○ 4유형 70% 이내	○ 4유형 65% 이내, 1~2유형 20% 이상 (4유형 최종 50% 이내를 목표로 매년 5%p씩 감축) ○ 비율 준수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
공동작업장	<ul><li>○ 임금15% 가산 또는 6시간 추가 중 선택</li><li>○ 상·하반기 운영</li><li>○ 재료비 30% 이내</li></ul>	○ 근로시간 연장(1주 35시간 이내) ○ 연중 운영가능 ○ 재료비 40% 이내
마을기업화		○ 마을기업 관련 교육 실시 ○ 교육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
기술습득 및 취업지원	○ 취업교육 월 20시간 인정	○ 취업교육 월 25시간 인정 ○ 취업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 ○ 기술숙련 최장 2년

# Ⅳ. 2015년 추진실적

## ▮사업기간

○ 상반기: 2015. 3. 2.~ 6. 30.

○ 하반기: 2015. 8. 3.~12. 22.(당초 11. 30. 기간 연장)

## ■추진사업 및 참여인원: 7개사업 64명(남 22, 여 42)

ਨੀ ਮੀ	री ठी छ	えづけね	인육	년(고령	(자)	비고
연번	사 업 명	추진부서	계	남	여	비고
	상반기 합계		31	8	23	
1	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	일자리경제과	3	_	3	
2	체육시설정비사업	문화체육과	3	1	2	
3	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	토목과	4	1	3	
4	하천 내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사업	안전치수과	5	1	4	
5	공원 환경조성 사업	푸른도시과	11	5	6	
6	폐자원 재활용사업	청소행정과	1	_	1	
7	다문화가정 지원사업	여성가족과	4	_	4	
	하반기 합계		33	14	19	
1	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	일자리경제과	5	_	5	
2	체육시설정비사업	문화체육과	3	1	2	
3	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	토목과	4	1	3	
4	하천 내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사업	안전치수과	5	3	2	
5	공원 환경조성 사업	푸른도시과	10	7	3	
6	폐자원 재활용사업	청소행정과	3	2	1	
7	다문화가정 지원사업	여성가족과	3	_	3	

## ▮ 예산집행

(단위: 천원)

통계목	예산액	집행액	집행율	잔액
합계	214,200	213,817	99.8%	383
기간제근로자등보수	208,500	208,487	100%	13
사무관리비	3,000	2,700	90%	30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700	630	90%	70
재 료 비	2,000	2,000	100%	0

# ∨. 2016년 세부계획

## ■사업유형별 모집 현황: 8개부서 9개사업 32명

	사 업 유 형	사 업 유 형 사 업 명		선발인원 (고령자)	성별
	계	8개부서	32(2)		
 1유형	1-3. 자원재생사업	폐건전지 수거, 홍보사업	청소행정과	4	무관
111 8	1-3. 자원재생사업	방치자전거 수거·정비사업	교통행정과	5	남5
2유형	2-2. 중소기업 취업지원 시업	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	일자리경제과	2(2)	여2
 3유형	3-2. 다문화가정 지원사업	다문화가정 지원사업	여성가족과	4	역4
	4. 마을가꾸기사업	청소년공부방 동아리활동 지원사업	교육지원과	1	여1
	4. 마을가꾸기사업	찾아가는 세원발굴	세무2과	2	무관
4유형	4. 마을가꾸기사업	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	푸른도시과	6	무관
	4. 마을가꾸기사업	공원환경 개선 사업	푸른도시과	6	무관
	4. 마을가꾸기사업	우리동네 행정달인	남가좌제1동	2	무관

<sup>■ 1</sup>유형: 지역자원 활용형 ■ 2유형: 지역기업 연계형 ■ 3유형: 서민생활 지원형 ■ 4유형: 지역공간 개선형

## ▋처리절차



## 1 신청자 접수

#### 가. 신청 대상자의 범위

-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(외국인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)
-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

#### [ 2016년 기준중위소득 60% 범위(예시)1) ]

(단위 : 원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
60% 범위	974,899	1,659,962	2,147,411	2,634,860	3,122,309	3,609,759

○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'선발기준 점수표'활용 ☞ [참고1]참조

#### 나. 배제 대상자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
-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
- 접수 시작일 기준, 대상사업<sup>2)</sup>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(최근 3년 기준)
-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, 3)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
- 공무원 가족 , 1세대 2인 참여자 ,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-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또는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

## 다.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

○ 접수기간 : 2016. 1. 20.(수) ~ 1 . 27.(수) [6일간]

○ 접 수 처 : 주소지 동 주민센터

<sup>1) 「</sup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○136호(2015. 7.29.)」

<sup>2)</sup> 대상사업: 지역공동체일자리(행자부), 공공근로(지자체)

<sup>3)</sup> 취업지원프로그램 :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

- 신청구비서류
  - 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
  - ②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(필수) 및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,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
    - ※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
  -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
    - ※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모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
  - ④ 가점대상 증빙서류
  - (5)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

## 2 신청자 자격 확인

**가. 신청자 자격 확인 기간:** 2016. 1. 27.(수) ~ 2. 5.(금) [6일간]

#### 나. 자격 확인 내용 및 방법

연번	조회내용	방 법	조회기관	결과조치
1	가구소득	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공문 발송	건강보험 공단	중위소득 60%이상 배제
2	재산	일모아시스템 조회		2억 이상 배제
3	수급자 여부	일모아시스템 조회	사회복지과	생계급여 수급자 배제
4	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	일모아시스템 조회		타 사업 참여자 배제
5	장애인 여부	일모아시스템 조회	사회복지과	근로능력 확인
6	이탈주민 여부	확인증 확인	자치행정과	가점

## 3 대상자 선발

#### 가. 선발기준 및 증빙자료

○ 가구소득 :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

- 가구의 범위 :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

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"0원"으로 간주

- 1세대에서 2인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가로 소득액 산정

○ '1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

\* 건강보험료 납부액: 소득인정액(기준중위소득×0.6)×0.0306

(단위 : 원 / 월)

	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	중위소득(A)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
60% 이하	소득인정액 (A×0.6)	974,899	1,659,962	2,147,411	2,634,860	3,122,309	3,609,759
	보험료 (A×0.6×0. 0306)	29,832	50,795	65,711	80,627	95,543	110,459

○ 재산 :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

○ 세대주

- 세대주(가장) :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를 원칙

- 여성세대주(가장) : 여성세대주(가장)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

대하여만 가점 부여를 원칙

○ 부양가족: 주민등록표에 의한 확인

○ 장기실업자: 일모아시스템에 의한 확인

○ 휴·폐업자: 행정기관 또는 실직·휴·폐업 기관의 증명서

○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로 확인

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"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"을 소지한 자

#### 나. 참여자 선발절차

-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
-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
  -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
  -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
  - 2순위까지 미달되는 단위 사업은 「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」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
- \*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('17년 사업부터는 선발 제한)
- \* 노숙자 및 쪽방촌 거주자, 청년(18~34세) 우선 선발, 청년 선발비율 5% 이상
-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워칙
- \*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: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>부양가족수> 장애인가족>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
-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 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
  - 예비대상자에게는 대기 순번 부여
- 근로능력 미달자는 근로시간 단축
-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
-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사업 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

### 4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

#### 가. 임금단가

- 참여자 1인당 1일(5시간)인건비 : 30.150원 (시급 6.030원×5h)
- 간식비 등 별도 지급 : 1일 3,000원 이내

#### [※ 월 20일 4주 만근 시 월 급여 내역 (4대보험 공제 전)]

(단위 : 시간 / 원)

구분	근무시간	시급	일당	간식비	비고	월 평균급여
65세 미만 참가자	5	6,030	30,150	3,000	주·월차수당 별도	810,000
65세 이상 참가자	3	6,030	18,090	3,000	주·월차수당 별도	510,000

나. 임금지급 방식 : 익월 5일 이내 참여자 본인 계좌로 입금

#### 다. 근무시간

○ 65세 미만 :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

○ 65세 이상 :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

#### 라, 유급 주 휴일, 연차 유급휴가

-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 부여
- ※ 국경일 등 관공서 휴일 임금 미지급, 유급 주휴일 수당 지급
- 사업기간 중 1월간의 기간 동안 개근 시 익월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
-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

## 5 신청자 및 사업담당자의 관리

#### 가.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

- 부적격자 선별·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
-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업훈련 권장
-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(사업부서)
-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 참여 유보 (10일간)
- 사업참여자 교육 실시
- 안정적 민간일자리 전환을 위한 취업상담 등 기회제공 (1회 이상)
- 사업종료 시 고용서비스 안내

### 나. 4대 보험 의무 가입

#### 다.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
## 6 사업의 지도 및 감독

#### 가. 사업장 관리

- 사업 목표량 부여
- 사업장 지도·감독
-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

#### 나.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

-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
- 안전 책임자 지정·운영 및 임무
  - ▶ 부서장을 안전책임자로 지정·운영
  - ▶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
- 사업장 안전관리
  - ▶ 안전보건교육 실시(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)
- 다. 근로자 보건 관리: 건강검진 실시
- 라.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

## Ⅳ 행정사항

- **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안내 및 신청서 접수** : 동주민센터
- ■보도자료 배포 및 매체 홍보 : 홍보담당관
  - 붙 임 1. 201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자치부 지침 1부.
    - 2.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고문 1부.
    - 3.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 신청서식 1부. 끝.

#### 참고1

# 《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(표준안)》

(앞면)

고려요소	판단기준	배점	비고
	총점 155점		
취업보호·지원대상자	취업보호·지원대상 증명서	<b>10</b> (10,0)	•해당 법률규정 : 뒷면참조
세대원수 (세대주·동거인 제외)	3명이상, 2명, 1명, 없음	<b>15</b> (15,10,5,0)	
장애인 및 가족	여, 부	<b>5</b> (5,0)	
세대주	여성세대주(가장), 일반세대주, 세대원	<b>10</b> (10,5,0)	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	<b>20</b> (20,0)	•참여자 본인이 증명
결혼이주여성	여, 부	<b>20</b> (20,0)	
장기실업자 및 휴·폐업자 (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)	여, 부	<b>15</b> (15,0)	• 장기실업자 :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• 휴·폐업증명서 제출
	재산액 없음	30	
재산기준	재산액 5,000만원 미만	20	
게 근기 교	재산액 5,000~10,000만원	10	
	재산액 10,000~20,000만원	0	
기타 자치단체 판단	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	30~0	• 단위시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
	감점사유 △50점		
	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	△10	•매년 1일이상 임금을
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	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참여자	△20	받은 경우임
NEDVIN	최종접수일 기준 최근3년간 연속참여자	△30	* 1년 참여자 :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
기타 자치단체 판단	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- 근로능력 미달자,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	△20~0	•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

#### (뒷면)

- ①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 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,「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
-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
-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
-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「자치단체의 장」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